

4

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

[별표 제V-1-1호]

격리 및 강박 지침

2019. 3.



보건복지부



대한신경정신의학회

목 차

1. 정의	433
2. 격리·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	433
3. 격리·강박 시행시의 원칙	433
4. 격리·강박의 시행시간 기준	434
5. 격리·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	435
6. 격리·강박의 기록	436
7. 격리(강박)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	436
[별지 제V-1-1호] 격리·강박 기록지	437

1. 정의

- 가. '격리'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.
- 나. '강박'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.

2. 격리·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

가. 기본 조건

-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(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제2항)

나. 구체적 상황

-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
-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
- ③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
-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
-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·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
-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
- ⑦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

다. 단,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·강박을 시행해야 한다.

라.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.

3. 격리·강박 시행시의 원칙

가. 격리·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, 해제는 지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.

나.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·강박을 시행한다.

다.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격리·강박을 시행한다.

- 라.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(의료인(의사·간호사)이 포함된 2명 이상)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.
- 의료인이 아닌 훈련된 직원들은 해당 의료인(의사·간호사)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, 의료인(의사·간호사) 부재 시에는 격리나 강박을 수행할 수 없다.
 - 의료인(의사·간호사)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강박 기록지[별지 제V-1-1호]의 “참여자명 란”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한 직원들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마.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바.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,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. 엎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, 순환을 방해하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한다.
- 사. 격리·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·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.

4. 격리·강박의 시행시간 기준

- 가. 격리·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, 강박 4시간 이하이다.
- 나.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% 이내에서(격리 6시간, 강박 2시간) 처방될 수 있다.
- 다. 격리·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즉,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,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단,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*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·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.
- * 다학제평가팀 구성 :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,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, 간호사,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
- 라.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·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.

〈 격리·강박 시행시간 기준 〉

구분	성인(19세이상)		미성년자(19세미만)	
	격리	강박	격리	강박
1회 최대시간	12시간	4시간	6시간	2시간
연속 최대시간	24시간	8시간	12시간	4시간

5. 격리·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

- 가.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·간접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나. 격리시 최소 1시간마다, 강박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.
-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하며,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. 필요시 환자의 신체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.
- 다.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(피부색), 활력증후(혈압, 맥박, 체온, 호흡), 자세, 활동, 외상,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.
- 격리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.
- 라.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대처해야 한다.
- 마. 격리·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·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.
- 바. 격리·강박중 환자의 정서적,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.
- 사. 격리·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. 이를 통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·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다.
- 아. 지진,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·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리·강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.

6. 격리·강박의 기록

- 가. 격리·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·강박 기록지(별지 제V-1-1호)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.
- 나. 진료기록부에는 격리·강박의 사유 및 내용, 병명 및 증상, 개시 및 종료시간,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.(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1조)
- 다. 격리·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·강박 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.

7. 격리(강박)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

가. 격리(강박)실의 구조

- 격리(강박)실이란 「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보호실을 말한다.
*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.
- 격리·강박은 격리(강박)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* 보호복·보호조끼·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
- 격리(강박)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.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하고 관찰을 지속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.
- 격리(강박)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,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. 벽면에는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.
* 강박실을 격리실과 분리하여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박실 벽면에 완충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

나. 강박 도구

-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한다.
-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,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탁해야 한다.

[별지 제 V-1-1호]

격리·강박 기록지

환자	등록번호	성명	나이 (남, 여)	
	진단명			
시행	시행일시	지시자 (서명)	수행자 (서명)	참여자명
해제	해제일시	지시자 (서명)	수행자 (서명)	참여자명
제한의 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격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강박 <input type="checkbox"/> 억제대 <input type="checkbox"/> 2포인트 <input type="checkbox"/> 3포인트 <input type="checkbox"/> 4포인트 <input type="checkbox"/> 5포인트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호복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호조끼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사제 사용 여부 ※ 중복 선택 가능			

격리·강박이 필요한 이유

-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
-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
-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
- 기물파손 등 병동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
-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
-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
-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

격리·강박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(필요시 기재)

※ 격리강박은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음

격리·강박 모니터링(간호기록지에 기록 가능)

※ 간호사정 실시 시간 및 혈액순환상태, 활력증후, 사지운동, 정서적 상태 확인 등 조치 내역 기록

격리·강박을 연장하는 이유 및 기록

※ 1회 처방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이유 및 지시자, 수행자, 시행·해제 시간 등 기록